

내년 국비 도 신규사업 반영 전략 마련

실·국별 대책 점검 제2경춘국도 설계비 확보 등 포함

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2경춘국도 설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반영 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27일 최문순 지사 주재로 2018년도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실·국별 대책을 점검했다.

지난 1일 국회로 넘어온 정부예산안에는 도 관련 5조2,700억원대의 사업예산이 편성됐다. 분야별 사업

비는 SOC 9,470억원, 문화·관광·체육·폐광지역개발 830억원, 경제 활성화 1,950억원, 지역발전사업 5,540억원, 민생안정 국민안심사업 3조4,960억원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로 도내 신규 SOC 사업은 모두 제외됐다. 올해를 끝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올림픽경기장 접근도로망이 모두 완공되면서

SOC 예산만 1조원 가까이 내년 정부예산에서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SOC사업 신규반영 최우선 순위로 제2경춘국도 설계비 10억원 반영을 설정했다. 서울~춘천 구간 곡심한 교통체로 인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기 추진의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접경지역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현기자 sunny@



삼척세무서 세정협의회의 이웃돕기 현물 전달. 삼척세무서 세정협의회(회장: 김진학·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는 27일 추석을 맞아 이웃돕기 성품으로 200만원 상당의 백미 75포대(10kg)를 삼척시에 기탁했다. 삼척=황만진기자

춘천 (주)원진 남한구씨 건설기능경기대회서 2위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도내 업체가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유주현)는 지난 22일 충북 음성군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열린 제25회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춘천 (주)원진(대표:장명진)의 남한구씨(사진)가 조적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달 16일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재규기자 koo@

‘발주기관-시공사’, ‘시공사-설계사’ 투트랙 개선

턴키공사 甲질 뿌리뽑기 맞춤형 ‘처방전’ 나온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곳곳에 박혀 있는 갑질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관련기사3면

발주기관과 시공사, 시공사와 설계사 ‘투트랙’으로 갑질 유형에 따라 맞춤형 처방전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턴키공사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공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턴키 시장에서는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체결한 불공정계약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이 끊이지 않았고, 시공사와 설계사도 갑을 관계로 인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발주기관과 시공사 사이에선 예측하지 못한 민원 등으로 비용이 늘어날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사

입찰안내서 등 독소조항 손질
국토부, 연말까지 개정 마무리

에 그 증가분을 전가하고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 외 추가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고선 계약금액 증액 청구 시한을 제한하는 게 대표적이다.

시공사와 설계사 간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 설계비용을 설계사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고 시공사가 설계사의 지분을 임의로 변경·제한하는 경우 등이 갑질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턴키공사의 불공정관행을 손질하기로 하고 지난 2월 불공정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TF와 시공사-설계사 불공정관행 개선 TF 등으로 구분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 관행, 시공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관행의 사례를 발굴한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턴키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발주기관과 시공사,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공정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정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불공정관행을 유발할 만한 소지를 없앤 입찰안내서의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28일에는 턴키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공정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과 입찰안내서 등의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시공-설계사간 불공정관행도 근절

입찰안내서에 설계보상비 지급 구체적 규정 마련

국토부, PQ때 ‘시공-설계사’ 계약서 포함 추진

정부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수행 중 설계사에 대한 시공사의 갑질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한다.

국가계약법은 턴키 입찰에서 탈락한 시공사에 공사비의 2% 범위 내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계보상비를 받은 시공사는 설계사에 적정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적정 수준의 70%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인대로, 관리비, 경비 등 합동사무소 운영비와 영업비를 설계사에 떠넘겨 설계사들이 받는 설계보상비가 절반 이하인 사례도 감지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시공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에 설계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시공사와 설계사가 설계계약을 뒤늦게 체결해 설계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원천 차단된다.

턴키 입찰이 끝나면 설계 작업은 즉시 시작되지만 시공사와 설계사 간 계약이 설계 착수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계 완료 후 수개월이 지나고선 준공금을 지급해 설계사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다.

국토부는 입찰 때 제출서류에 업체 간 계약서를 포함하도록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도 시공사와 설계사 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입찰안내서를 개선할 계획이다.

턴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들과 설

계사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방식도 변경된다.

턴키공사를 수행하는 컨소시엄에는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9개의 시공사들이 참여하는데, 대부분은 시공사와 설계사가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지방의 소규모 시공사의 경우 설계 준공 후에도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국토부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에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턴키공사 낙찰 후 시공사가 설계사의 컨소시엄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외하는 갑질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본설계 지분율과 비교해 실시설계 지분율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발주처-시공사간 독소조항 무더기 수정

과업범위 벗어난 비용 전가 '제동'
계약액 증액 청구 기간 제한 없애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가능

입찰안내서에工期연장 간접비
증액분 요구 못하게 한 조항 삭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에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갑질 해결의 열쇠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과 입찰안내서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과 입찰안내서에 들어 있는 갑질 독소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예측불가능한 민원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시공사가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인해 환경개선, 교통처리, 안전관리 등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될 경우 입찰안내서에는 증액이 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사구간 내 지상·지하 시설물 교체나 이설비용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 있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 발휘의 문제 등으로 판단해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입찰안내서에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입찰안내서에 일률적으로 증액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남겨둘 계획이다.

과업 범위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것도 개선 대상이다. 일부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된 사업과 관계 없는 인접 공구의 공사를 과업 범위 외에 포함시켜 발주하기도 하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안내서에 각종 요구조건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업비 전가가 사업성 악화로 연결돼 유찰 등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요구 사항은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을 제한해 놓은 입찰안내서 조항을 없앤다. 현재는 계약금액 증액 청구는 그 원인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의사를 통지하거나 분쟁협약이 어려울 경우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30일의 기준을 두는 것은 독소조항인 만큼 국토부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찰안내서를 수정할 계획이다.

연차별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인해 추가되는 인력투입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과 책임 구분이 곤란한 공기연장 간접비 증액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된다. 국토부는 예산 확보 지연이나 공기 연장 등은 계약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만큼 입찰안내서 문구를 삭제하거나 계약법에 맞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 3D 설계도서 제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손보기로 했다. 최근에는 대부분 3D 프로그램으로 설계 작업이 진행되는 데, 설계도서를 2D로 제출하라는 조항 탓에 이중 작업이 불가피해, 이 같은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박경남기자 knp@